

<p>改正과 서울市의 駐車場設置條例가 改正됨에 따라서 現行 條例를 改正된 法 規定에 一致되도록 整備하면서 이 事業運營에 있어 現況과 맞지 않는 土地의 賣却規模와 Methods 등을 明示하여 住居environment改善事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, 이 改正案의 關係法令과 一致하고, 條例運營上 現況과 맞지 않았던 事項을 충분히 反映하여 补完되었다고 인정되어 市長이 提出한 改正案대로 改正하기로 하였습니다.</p> <p>두 번째, 서울特別市再開發事業條例中 改正條例案은 93年度 서울市와 그 所屬機關의 職制가 改正됨에 따라서 이 條例에서 정한 再開發業務와 關聯된 價格評價委員會 業務가 당초 住宅局에서 都市計劃局으로 移管됨으로 業務分掌이 變更됨에 따라서 이 委員會를 管理하는 所屬公務員도 당초 住宅局長에서 都市計劃局長으로 바꾸도록 條例를 改正한 것입니다.</p>	<p>改正條例案의 구체적인 內容은 配布하여 드린 內容을 參考하여 주시고, 아무쪼록 우리 委員會에서 審議하고 修正한 內容대로 3件의 條例가 改正될 수 있도록 同僚議員님들의 적극적인 協助를 바랍니다.</p>
<p>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白昌鉉 감사합니다.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查報告한 서울特別市再開發事業條例中 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, 그리고 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 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.</p>	<p>議員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시면 이상 3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
<p>(議事権 3打)</p>	<p>.....</p> <p>(參 照)</p>
<p>세제로 서울特別市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은 政府施策에 따라서 서울市가 建立하게 되는 公共아파트와 買入者아파트를 建設할 수 있는 財源을 서울市가 出資하도록 되어 있어, 公社의 法定資本金 限度額을 上向하도록 하면서 92年度 地方公企業法이 改正됨에 따라 公社 運營要領을 地方公企業法에 맞도록 條例를 改正하고자 한 것이나, 條例改正案中 公社에 대한 業務監督과 業務의 報告 및 檢查를 要求할 수 있는 機關을 市長 外에 內務部長官을 追加하려고 한 것은 地方化時代의 趨旨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指摘되어서, 또 地方公企業法으로도 公社運營을 직접 規制할 수 있는 事項이라고 판단되어 公社의 業務監督과 報告 및 檢查 要求權者를 規定한 條例改正案 第28條와 第29條 中 內務部長官을 刪除하도록 우리 委員會에서 修正案을 提案하였으며, 나머지 改正案은 市長이 提案한 內容대로 改正하기로 하였습니다.</p> <p>이번에 上程된 3件의 條例는 서울市 都市發展에 중요한 內容을 規定하는 條例로서 우리 委員會에서는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深度 있는 審查를 하였습니다.</p>	<p>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1항중 “주택국장”을 “도시계획국장”으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1조의2(경영의 기본원칙) 공사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중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중 “1조원”을 “1조5천억원”으로 한다.</p>

<p>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5조(정관)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목 적</li> <li>2. 명 칭</li> <li>3. 사무소의 소재지</li> <li>4. 자본금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사업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임직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7. 이사회에 관한 사항</li> <li>8.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</li> <li>9. 사채발행 및 기채에 관한 사항</li> <li>10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</li> <li>11. 공고에 관한 사항</li> <li>12.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13. 기타 필요한 사항</li> </ol> <p>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21조의2(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) ①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이익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존한 후 그 잔액의 20분의 1이상을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때까지 적립하며,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
<p>제9조제1항중 “투자관리관”을 “재정기획관”으로 한다.</p>	<p>제4장에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
<p>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10조의2(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</li> <li>2.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</li> </ol>	<p>제27조의2(선수금) ①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
<p>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9조(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) 공사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시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가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의 범위와 같다.</p>	<p>제27조의3(재정지원)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.</p>
<p>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1조(예산) ①공사는 매사업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</p>	<p>제27조의4(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)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
<p></p>	<p>제27조의5(물품관리)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,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, 물품</p>

<p>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30조의2(경영평가 및 지도) ①시장은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영원칙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5. “신축건축물”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위에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후 제4호의 특례제한건축물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p>제4조 중 “법 제7조제2항”을 “법 제7조제3항”으로, “시장”을 “시행자”로 한다.</p> <p>제5조제1항 중 “일반주거지역의 기능”을 “주거 기능”으로 한다.</p> <p>제6조제1항 중 “법 제6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6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</p> <p>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7조(공동주택 건설계획)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당해 지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국·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제8조제3항 중 “참작하여” 다음에 “주거환경개</p>	<p>선계획에서 건축물의”를 추가한다.</p> <p>제12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다만, 특례제한 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8조 중 “건축법 제47조”를 “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율”로 한다.</p> <p>제19조 중 “건축법 제49조제1항”을 “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”로 하고 “동조 제2항”을 “건축법 제49조제2항”으로 한다.</p> <p>제20조 중 “건축법 제48조제1항”을 “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”로 한다.</p> <p>제21조 중 “규정은”을 “규정에 불구하고”로 한다.</p> <p>제25조본문단서 중 “다음 각호의 주차대수에 따라 산정한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”를 “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로 하고,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.</p> <p>제32조제1항제2호 중 “그 건축면적 이하”를 “그 건축면적 이하로 하되 신축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로 하고, 동조제2항제3호 중 “건축법 제39조의2제1항”을 “건축법 제49조제1항”으로 한다.</p> <p>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33조(토지의 가격산정 및 매각시기) ①제31조에 의한 연고권자는 개선계획수립후 건축허가 전까지 제32조에 의한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토지매각 대금의 결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[별표] 중 “신축(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위에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)”을 “신축건축물”로 한다.</p> <p>[별지서식]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삭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</p>
---	--